

火災豫防을 爲한

安全點檢과 保險의 函數

梁 承 圭

〈서울法大教授·法博〉

一. 머리말

을 겨울에 접어들면서 이미 大旺코너, 大邱西門市場, 明洞「라데빵스·빌딩」鍾路의 三立「밀크 훈」의 火災등 큰 불이 烟리를 끌고 일어나고 있다.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다룰 때에는 더 할 수 없는 損失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인간에게는 언제나 불의 管理에 만전을 기하고 火災事故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세울 것이 요구되고 있다. 火災의 安全點檢은 바로 그 對策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고, 保險은 일단 발생한 火災事故에 대한 消極的 인對備策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火災의 安全點檢과 保險의 函數」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編輯인의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나 安全點檢의 技術的인 측면에 대해서는 필자의 능력 밖의 일임을 먼저 밝혀 둔다.

保險은 같은 危險에 놓여 있는 대수의 經濟主體가 하나의 共同危險團體를 구성하여 일정한 基金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事故로 말미암아 火難을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支拂함으로써 經濟生活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

는 制度이다. 이것은 우리의 經濟生活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偶發의 事故危險의 產物로서 人間의 理性의 힘으로 발견한 가장 위대한 制度의 하나로서 손꼽히고 있다.

갖가지 많은 損失 possibility의 危險에 놓여 있는 人間에게는 大數의 法則에 의하여 그 損害를 分散하고 있는 保險制度를 떠나서는 經濟生活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文化가 발전하면 할수록 保險의 需要도 늘어나는 것임을 人類의 歷史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二. 身體損害賠償特約附 火災保險

火災保險은 火災로 인하여 생길 損害를 補償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이다(商 683條). 여기서 「火災」란 通常의 用例로서 이해되는 개념으로 불로 인한 災害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美國에서는 火災保險에서의 불(fire)을 「좋은 불」(friendly fire)과 「나쁜 불」(unfriendly fire, hostile fire)로 나누어 그 火災의 개념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保險의 目的이 어떠한 불로 燃失되었느냐에 따라 保險者의 責任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가령 保險의 目的인 寶石반지가 난로불에 떨어져 燃失되었을 때에는 「좋은 불」로 인한 災害로서 保

—<論 壇>—

險者는 그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觀念은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든 火災란 獨립된 燃燒力を 가지고 그것이 발생하면 人命과 財產의 피해를 가져오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火災로 인한 被保險者の 財產上의 損害는 火災保險에서 擔保되는 것이다, 人命의 被害에 대하여는 保險者が 당연히 그 責任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火災로 인한 人的损害에 대한 教育方法이 요구되는 것이다, 1973년의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이하 火災保險法이라 함)은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產上의 損失을 예방하고 신속한 災害復舊와 人命被害에 대한 適當한 补償을 하게 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

에 기여하게 함을 目的으로, 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이른바 「身體損害倍償特約附火災保險」에 의 加入을 강제하고 있다. 이 保險은 火災로 인한 建物의 損害와 他人의 死傷에 대한 賠償責任으로 인한 被保險의 損害를 保險者が 補償하도록하는 特수한 保險의 形태이다(同法 2조 2호)

이것은 결국 火災로 인한 人命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一般 火災保險에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을 덧붙인 일종의 強制保險이다. 이러한 保險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와 西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64년 이래 실시하고 있는 自動車損害賠償責任과 더불어 身體損害賠償特約附火災保險을 强制保險으로 하여 人命被害의 利益을 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1. 特殊建物 現況

(75. 11. 30 現在)

地城 業種別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大 田	全 州	光 州	計
國 有	251	70	38	26	17	23	33	458
學 校	311	102	45	82	49	24	46	659
病 院	42	20	7	6	3	4	5	87
호 텁	73	27	18	7	2	1	6	134
市 場	227	58	47	25	15	3	10	385
4層 以 上	4,030	1,357	250	269	137	45	121	6,209
公 演 場	104	57	29	16	16	6	16	244
攝 影 所	10	6	2	—	3	3	2	26
屋 内 販 賣 場	25	5	6	5	4	1	2	48
共 同 住 宅	230	45	16	4	1	1	3	300
私 設 講 習 所	24	15	12	3	3	6	7	70
요 리 館	38	13	2	6	—	—	3	62
工 場	1,323	646	430	328	77	45	59	2,910
市 民 아 파 트	47	35	14	7	7	1	4	115
計	6,735	2,458	916	784	334	163	317	11,707

火災保險法에 의하여 保險이 강제되고 있는 特殊建物은 (가) 4층 이상의 건물, (나) 국유건물·교육시설·벽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며(同法 2조 3호), 同法施行令 제 2조는 그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同法의 通用地城인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大田, 光州 및 全州市의 特殊建物의 現況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法에서 정한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그 建物이 竣工検査에 합격한 날 또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 날로부터 30日 안에 身體損害賠償特約附火災保險에 加入하여야 하고 每年 이를 更新하여야 할義務를 지고(同法 5조 1항, 4항, 5항) 또 이에 附加해서 風災, 水災 또는 倒壞 등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 할 수 있으며(同條 2항), 損害保險會社는 이를 保險契約의 締結을 拒絕하지 못한다(同條 3항). 그리고 同法 제 6조에서는 外國人 등의 所有建物에 대한 保險加入義務免除을 규정하고 있으나 保險者가 契約締結을 거부 할 수 있다는 事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한 바 없다. 이것은 強制保險의 實施에 따라 保險加入義務者의 保險契約을 保險者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前提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安全點檢에서 不良建物로 判定이 났을 때에도 保險者는 당연히 그 保險을 引受하여야 할 것이다는 法律上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保險을 法上 再考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保險에서 保險者가 擔保하는 損害의 범위, 즉 保險金額은 火災保險은 特殊建物의 時價에 해당하는 金額이고, 그 時價決定의 基準은 財務部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同法 8조 1항 1호 2항). 이에 따라 特殊建物의 時價決定方法에 대하여는 財務部令인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

險加入에 관한 施行規則 제 2조 2項에서 정하고 있으며 保險者는 이것을 基準으로 保險을 引受하게 된다. 또 身體損害賠償責任 중 死亡의 경우에는 被害者 1인당 50萬원 이상, 傷害의 경우에는 被害者 1인당 死亡保險金額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에 정하는 金額(同法 8조 1항 2호, 3호)인데 被害者 1인당 50萬원은 責任保險의 外形만 갖춘 補償金額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 補償金額을 現實化할 필요가 있다.

責任保險契約은 被保險者が 保險期間 중의 事故로 인하여 제 3자에게 賠償할 責任을 진 경우에 保險者가 이를 補償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損害保險契約으로서(商 719條), 保險請求權은 원칙으로 被保險者が 가지는 것인데(商 724조 참조), 火災保險法은 特殊建物의 火災로 인한 被害者の 보호를 위하여 保險金額의 한도에서 保險者에 대하여 직접 그 支給을請求할 수 있고(同法 9조) 또 保險金額請求權은 이를 押留할 수 없도록 하였다(同法 10조). 이것은 強制責任保險에서 被害者の 보호를 第一 중요시 한 것으로 당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三. 安全點檢과 保險의 函數

1. 安全點檢

火災의 安全點檢은 火災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對備策의 하나로서, 建物内外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火災의 要因을 발견, 제거하고 이에 대한 注意를 환기시킴으로써 火災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專門的인 火災豫防診斷이다.

火災로 인한 燃失은 귀중한 人命과 財產을 앗아가고 쟁더미만을 남길 뿐이다. 이 쟁더미를 보고 느끼는 것은 누구나 이러한 불행한 재난이 없기를 염원할 것이고, 그것의 방지를 위한 對策을 생각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消防法은 消

防署長에게 火災의豫防措置를 취하고 消防對象物의 檢查權을 부여하고(同法 3조, 4조) 또 서울特別市長 등 行政官署는 消防對象物의 改修命令 등을 내릴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同 5조)

물론 이러한 法規에 의한 철저한 行政的措置가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실정은 火災豫防을 위한 새로운 對策이 요구되었으며 火災保險法이 特殊建物에 대한 保險加入義務를 지우면서 火災豫防 및 消防施設에 대한 安全點檢을 실시하는 機關으로서 韓國火災保險協會를 창설하여(同法 第11조). 이를 安全點檢을 위한 法定機構로 한 것이다.

火保協會는 火災保險法에 의하여 火災保險에의 加入이 義務化되어 있는 特殊建物에 대하여 保險契約 締決時 또는 保險契約 更新時마다 火災의 安全點檢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安全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同法 16조 1항, 2항). 協會는 이에 의한 安全點檢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전에 이를 關係人에게 通告하여야 하고(同法施行令 12조 1항), 이에 대응하여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火保協會가 하는 安全點檢에 應하어야 하며, 만일 그 所有者가 이에 不應할 때에는 協會는 消防官署의 長에게 그에 대한 安全點檢을 요청할 수 있다(同法 16조 3항, 4항). 그리고 火保協會는 安全點檢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그 防火施設의 改修에 필요한措置를 취하여 줄 것을 建議하여야 하고(同法 17조), 또 安全點檢을 실시할 때에는 10日 안에 그結果를 管轄消防署의 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同施行令 12조 5항). 그리고 協會는 安全點檢을 실시한 후 그結果를 그 자리에서 關係人에게 口頭로 알려주나, 點檢實施 후 빠른 時日 안에 차세한 條項을 記錄한 點檢結果通告書를 정식으로 建物所有者

에게 送付하고 있는데, 이것은 法律上の義務는 아니나, 그結果를 行政機關 뿐 아니라 特殊建物所有者에게 送付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措置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다.

同法에 의하여 火保協會가 창설되고 協會에서 실시한 安全點檢實績은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10.31 현재 總對象建物數 11,707의 81.4%에 해당하는 9,537件이고, 一部建物의 所有者는 安全點檢에 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아직도 火災保險法에 대한 認識이 一般化되지 못하였다는 反證이 아닌가 여겨진다. 火災로 인한 燃失은 所有者的 개인적인 損害일 뿐 아니라 國家 전체의 經濟的 損失임을 자각하여 그豫防을 위하여 누구나 기꺼히 協力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表 2. 安全點檢實績 (75.10.31현재)

地域	區分	對象件數	實施回數	實施件數	未設置件數	備考
서울		6,735	11,712	6,011	724	
釜山		2,458	3,656	2,127	331	
大邱		916	1,090	668	248	未實施件은
仁川		784	210	210	574	新規對象 및
大田		334	218	218	116	拒否件은
全州		163	100	100	63	로現在實施
光州		317	203	203	114	中임
計		11,707	17,192	9,537	2,170	

註) 仁川, 大田, 全州, 光州는 75.7.1부터 實施

〈参考〉 點檢拒否 物件

서울			總計 [一般: 158 工場: 177 計 335]		
區分	一般	工場	署別	一般	工場
中部	43		中部	14	4
城東	24	55	東部	5	8
龍山	10	13	東北	1	6
永登浦	21	42	東南	14	18
北部	19	19	東北	5	13
西部	14	5	東南	1	7
計	131	134	計	20	18
				38	7
					25

2. 保險과 安全檢査과의 관계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射倖契約에 속하므로 그 契約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保險者는 그 保險을 引受할 것인가, 또 引受한다면 그 保險料率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危險에 관한 정확한 評價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保險者는 多數의 契約者와 保險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일일이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어서 保險契約法은 保險契約者에게 保險契約 당시에 중요한 事項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保險者에 대하여 告知하도록 하는 이른바 告知義務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契約時故意 또는 종대한 過失로 이義務를違反하였을 때에는 일정한期間 안에 保險者는 그 契約을 解止하고 保險事故가 발생하여도 保險金額의 支給責任을 지지 않게 된다(商 651조, 655조). 여기에서 火保協會에서 실시하는 安全點檢과 身體損害賠償特約附火災保險契約의 제결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保險契約에서 保險契約者에게 告知義務를 지우는 것은 保險者가 일일이 保險의 目的에 대한 危險率를 조사할 수 없다는 데에서 그것을 點有, 管理하고 있는當事者에게 중요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告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火保協會에서 保險契約時 또는 保險契約 更新時마다 실시하는 安全點檢은 保險契約者의 告知義務를 涼除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安全點檢은 火災의 要因을 發見除去하고 이에 대한 注意를 환기시킴으로써 火災를 미리 防止할目的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保險契約者的 告知義務에 의한 告知와는 별도의 것이고, 따라서 保險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安全點檢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告知義務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安全點檢에서 나타난 事實에 대하여는 保險契約者가 保險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保險者가 契約 당시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종대한 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保險者의 契約解止權은 排除된다고 풀이한다(商 651조 단어참조).

火災保險加入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身體損害賠償特約附火災保險을 영위하는 保險者는 損害保險會社이고, 火保協會는 그當事者는 아니다.

火保協會는 法律上으로 볼 때에 火災의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研究·啓蒙운동을 그業務로 하는 機構로서 保險者와는 獨립된 社團法人이다(同法 11조, 12조). 그러므로 火保協會가 特約附火災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것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각 損害保險會社에 의하여 그代理人으로서 그 保險을 引受하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法은 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特約附火災保險의 加入義務者와 損害保險會社의 契約強制를 둘고 있고(同法 5조), 財務部長官은 保險加入義務者가 그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加入義務者에 대한 認·許可取消, 營業의停止, 建物使用의 制限 등 필요한措置를 취할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同法 7조). 그리고 또 法은 安全點檢의 實施結果, 保險의目的인 特殊建物이 不良하다고 判定한 때에는 火保協會가 關係行政機關에 그 防火設施의改善에 필요한措置를 취하여 줄 것을 建議하도록 하였을 뿐(同法 17조), 保險者가 그 保險의 引受를 拒否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強制保險에 있어서는 保險契約者の 保險加入義務는 물론 保險者의 引受義務가 同시에 요구되는 것이고 하지만 不良한 保險의 目的에 대해서는 그것의改善이 이루어질 때까지 保險引受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火災의 要因을 除去하는 데 이 바지하도록 하는 것은 法의 目的에도 부합할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에 火保協會가 실시하는 安全點檢은 바로 特約附火災保險을 保險者가 引受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契約締結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保險料率에 의하여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四. 맷는 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安全點檢은 火災의豫防을 위한 事前對策이고, 保險은 우연한 事故가 발생한 때에 經濟的인 수요를 충족시켜 가급적 그 상처를 적게 하고자하는 事後對策이다. 人間의 經濟生活을 위협하고 人命과 財貨를 삼켜버리는 火災事故는 미리豫防하는 것이 最善策이고, 그 事故危險에 대하여는 각 經濟主體가 효율적으로 이를 分散할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人間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더구나 密集生活을 하고 있는 大都市에서는 火災의 危險은 언제

나 따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積極的・消極의 인 對備策을 세워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火災의 安全點檢과 身體損害賠償特約附火災保險은 바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制度로써 나타난 것이다.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入加에 관한 法律은 多數人이 集結하여 生活을 하게 되는 特殊建物에 대하여 그 所有者에게 付保義務를 지우고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專門의 機構를 창설하도록 한 것은 매우 실의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安全點檢과 保險과의 관계를 有機的으로 연결시키는 制度의 保障을 하지 못한 것은 主法上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付保義務者를 特殊建物의 所有者로 限定한 것도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建物의 所有者가 아닌 占有者, 가령 賃借人 등에 대하여도 그 建物의 利用關係에서 對人賠償責任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所有者를 制限하기보다는 保有者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is 國力이다

온 國民이 아껴쓰자